

## 보험의 이해 (Ⅲ)

공동집필 · 박해준 고문 A&Z 경영컨설팅(주)  
정보영 이사 물류신문사  
감 수 · 하태웅 변호사 법무법인 유·러

### < 목 차 >

1. 보험
2. 약관
3. 보험계약
4.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
5. 보험증권
6. 고지 의무
7. 손해보험
8. 초과보험
9. 중복보험
10. 일부보험
11. 화재보험
12. 운송보험
13. 해상보험
14. 격하보험
15. 책임보험
16. 자동차보험
17. 인보험
18. 생명보험
19. 상해보험
20. 상호보험
21. 자기보험
22. 희망이익보험

### 9. 중복보험(重複保險)

어떤 물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보험이 중복되어 붙여지고 또 그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예컨대 보험가액 1천만원의 건물에 대하여 갑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에서 7백만원, 을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에서 5백만원을 각각 보험금액으로 하였다면 2백만원이 초과된 중복보험이 된다.

그러나 화재보험과 운송보험과 같이 보험사고의 성격이 전혀 다른 보험이 붙여진 때에는 중복보험이 되지 않는다. 또 동일한 화재보험이라도 소유자자와 저당권자와 같은 물건에 대한 관계가 서로 다른 자가 각각 자기를 위하여 보험을 붙인 때에는 중복보험이 되지 않는다. 중복보험도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면 초과보험의 경우와 같은 폐단이 생긴다.

그래서 현행상법은 같은 목적과 같은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

과한 때에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2년의 제정상법 이전의 구상법에서는 동시 중복보험(同時重複保險)과 이시중복보험(異時重複保險)을 구별하였다. 전자에는 비례책임주의(比例責任主義), 후자에는 선보험우선주의(先保險優先主義)로 정하고 있었던 것을 1962년의 제정상법은 양자를 통털어 위와 같이 비례책임주의로 통일한 것이다.

중복보험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앞의 예에서 갑보험회사와 을보험회사의 보상금액은, 그 보험가액 1천만원에 대한 각자의 보험금액 7백만원, 5백만원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 갑보험회사가 지급불능이 된 경우에 을보험회사는 자기가 약정한 보험금액 5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갑보험회사가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가령 5백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5백만원 전액의 보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중복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 중복보험의 경우에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중복보험의 경우에 보험자의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0. 일부보험(一部保險)

어떤 물건에 붙인 보험의 보험금액이 그 물건의 보험가액에 달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예컨대 보험가액 1천만원의 가옥의 소유자가 그 가옥에 6백만원의 화재보험을 붙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위의 가옥에 4백만원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4\text{백만원} \times 600 / 1000 = 240\text{만원}$ 만을 보상하게 된다. 보상되지 않는 잔부(殘部)는 피보험자의 자신이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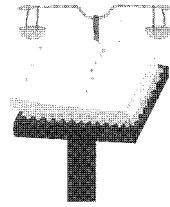
이것이 자가보험(自家保險: self-insurance)인데, 보험법의 하나로 일명 자기(自己)보험이라고도 한다.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개별약정으로 보험금액의 범위내에서 손해액의 전액을 배상하는 약정을 하는 것은 유효하다.

이러한 보험을 제1차위험보험이라고 하며 화재보험에서 많이 이용된다. 일부보험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전부보험이 있다. 전부보험(全部保險)이라함은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동액인 보험을 말한다.

## 11. 화재보험(火災保險)

화재로 인하여 물건에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는데,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화재보험의 목적물은 유체물이고, 상법 제685조는 목적물이 건물인 경우와 동산인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



「건물보험」은 기성(既成)인 것뿐만 아니라 건축중의 건물도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상법은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집합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소유에 속한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해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또한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발생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 자동차, 운송중의 화물 등은 화재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각각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운송보험에 의하여 보험된다.

화재보험에서는 소유자가 그의 소유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나 특약에 의하여 저장권자도 저장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점포를 화재로 불태우고 영업을 휴지함으로써 잃은 영업이익도 보험목적이 된다. 화재보험에 있어서의 화재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으나 일반 사회통념에 따라 화재라고 인정할 수 있는 성질과 규모를 가진 화력의 연소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설이다.

다만 특약에 의하여 화재의 개념을 한정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보상되는 손해는 그 화재를 원인으로 하여 보통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것이다. 하지만 화재의 소방 또는 화재손해의 감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화재보험도 일반적인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특약이 없으면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한 손해, 보험 목적의 성질·하자·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을 제외한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화재의 원인 여부를 불문하고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특약에 의하여 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화재의 원인을 한정하는 것은 상관없고, 약관으로서 지진·분화(焚火)·폭발 등으로 인한 화재를 제외하는 것이 보통이다. 화재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다른 보험과 동일하다.

이 보험증권에는 일반 손해보험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① 건물보험에서는 보험의 목적이 된 건물의 소재지, 구조와 용도
- ② 동산보험에서는 이것을 존치(存置)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 ③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격 등이다.

### 12. 운송보험(運送保險)

육상에서 운송되는 운송물의 운송중에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상법상 육상운송의 「육상」에는 호천(湖川)과 항만이 포함되지만, 약관에 의하여 항만은 제외되는 것이 보통이다.

운송보험의 목적물은 운송물이다. 운송중에 생긴 사고라도 여객의 생명과 신체에 생긴 사고

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운송보험계약이 아니고 인보험계약(人保險契約)이다. 또 운송에 이용되는 용구 예컨대 기차나 자동차를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것은 차체보험(車體保險)으로서 통칙규정의 적용을 받는 일종의 손해보험이지 운송보험은 아니다.

운송보험에서 보험사고는 운송중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사고이므로 충돌이나 전복으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이나 훼손과 같은 운송에 특유한 위험에 한하지 않고 운송함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화재·도난·파손·수해 기타의 모든 위험을 포함한다. 그러나 약관에서는 특정보험사고는 제외하는 것이 보통이다.

운송이 물건의 장소적 이전이므로 피보험이익도 여러 가지이다. 상품인 운송물에 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물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이익, 희망 이익보험에 포함되는 운송물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운송인으로서의 운임에 관한 이익 등을 들 수 있다.

이 운송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가액이 미리 약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약정이 없으면 운송지에서 운송당시의 운송물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이것은 운송보험이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짧고, 운송도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시점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가액불변경주의(保險價額不變更主義)를 취한 것이다.

운송물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 곧 희망이익은 약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보험가액중에 산입한다. 이밖에 보험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이것을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이다. 또 운송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긴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운송보험자는 일반면책사유, 이를테면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손해, 보험 목적의 성질·하자·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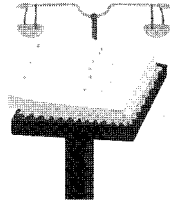
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 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순(路順)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것은 운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운송을 중지하거나, 변경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 13. 해상보험(海上保險)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항해에 관한 사고는 선박의 침몰·좌초(坐礁)·폭풍우 등의 항해의 고유한 사고에 한하지 아니하고 화재·도난·포획·선원의 불법행위 등도 포함된다. 항해에 관한 사고라도 여객이나 선원의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보험은 해상보험이 아니고, 인보험에 속한다.

또 해상보험이라도 법정 혹은 약정의 면책사



유가 있을 때는 해상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의 목적은 선박 또는 적하이다.

육상운송보험(陸上運送保險)과는 달라서 운송물 뿐만 아니라 운송용구로서의 선박도 보험의 목적이 된다. 선박인 이상 영리선 뿐만 아니라, 국공유의 선박이나 건조중의 선박도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적하라는 것은 해상운송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다. 이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선박과 적하의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보통이나 특약에 의하여 선박입차인이나 선박저당권자가 입은 손해 또는 타선과 충돌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해상보험에 있어서도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혹은 중과실이나, 보험의 목적의 성질·하자·자연소모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손해보험일반의 경우와 같다. 또 보험자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특약이 없으면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밖에 일정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법정(法定)하고 있으며, 또 약관에 의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보험기간은 당사자의 정함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항해보험의 보험기간 개시와 종료에 대하여 상법은 특칙을 두고 있다. 이 밖에 상법은 보험위부의 제도를 두고 있다.

보험위부(保險委付)라 함은 보험의 목적이 전부멸실한 것과 동일시할 일정한 경우에 피보험자는 자기의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취득시키고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예컨대 선박이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 그 상실(喪失)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보험금을 지급 받는 동시에 그 선박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제도이다.

#### 14. 적하보험(積荷保險)

배에 실은 하물(荷物)이 운송도중에 분실이나 훼손될 경우의 손해를 보전(補填)하기 위한 해상보험이다. 즉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적하에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해상보험을 말한다.

이 적하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가액이 당사자 사이에서 협정되는 것이 보통이나, 협정이 없는 때에는 그 적하당시의 시세에 의한 적하물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합산한 가액이 보험가액이 된다.

또 보험의 목적인 적하가 목적지에 도착함으로써 인하여 생기는 이익도 보험에 붙일 수 있다. 이것을 희망이익보험(希望利益保險)이라고 한다. 희망이익이란 장래에 취득(取得)할 가망이 확실한 이익을 말한다.

이 밖에 보험기간이나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하여는 해상보험의 경우와 같으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이외의 특정자 이를테면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 및 선박이 변경된 후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점이 이 보험의 특색이다.